

#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 
번호

2006

제출년월일 : 2010. 9. 13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시의회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수당은 미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(2006. 4. 7)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일비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(2008.12. 3.)한 바 있음.
- 이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이 가능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(2008.12.17.)이 2009. 2월 결산작성통합기준 책자를 통해 통보되었으나, 일부 논란도 있었고 조례 개정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추이를 지켜보았으나,
- 그동안 이를 달리하는 지침도 없었고, 현재 타 시군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 이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- 또한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정비

## □ 주요골자

- 시의회의원인 결산검사위원의 경우도 다른 결산검사위원과 동등하게 일비를 지급하고자 단서 조항을 개정함(안 제10조제1항).

## 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83조
- 「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현행)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3,000천원

○ 결산검사위원 수당(시의원) 150,000원 × 1명 × 20일 = 3,000천원

사전예고결과 : 별첨(또는 의견없음)

○ 부서 의견조회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생략 (「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호)

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○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 기준(발췌문)

# **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**

## **일부개정 조례안**

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과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2조(위원의 정수)**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2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, “시의회가 ”를 “시의회 의장이”로 하고, “1인을”을 “1명을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”를 “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”을 “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.”

“1. 세입・세출의 결산”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2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・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.”

제9조 중 “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84조제3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다만,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”를 “다만, 시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10조의 규정에 의한”, “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0조에 따른”, “제4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고 단서 중 “시의회의 의원이”를 “시의회 의원이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제12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2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회계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회계과장 안상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회계 담당 이범열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미령 (행정 3071)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(이하 "위원" "이라 한다)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-----&lt;삭 제&gt;----- -----&lt;삭 제&gt; -----.</p>
<p><b>제2조(위원의 정수)</b>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의회의 원은 결산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 과할 수 없다.</p>	<p><b>제2조(위원의 정수)</b> 결산검사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의회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</p>
<p><b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</b> ① 제2조 규정 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. 다만, 위원 중 1인을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</p>	<p><b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</b> ① 제2조에 따 른 -----시의회 의장이-----. 다만, -----1명을 ----- -----.</p>
<p><b>제6조(대표위원)</b></p> <p>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 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.</p> <p>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<b>제6조(대표위원)</b></p> <p>② -----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 괄하고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</b>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한다.</p> <p>1. 세입, 세출 결산</p> <p>②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같음한다.</p>	<p><b>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</b> ① --- -- &lt;삭 제&gt; ----- -----.</p> <p>1. 세입・세출의 결산</p> <p>②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・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같음한다.</p>
<p><b>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</b>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</b> ----- ----제84조제3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b>제10조(일비의 지급)</b> ① 위원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동안 일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10조(일비의 지급)</b> ----- ----- -----. 다만,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1조(일비의 계산)</b>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 까지로 한다. 다만,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.</p>	<p><b>제11조(일비의 계산)</b> ① 제10조에 따른 제4조제2항에 따른 -----.</p>
<p>② 제1항의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을 포함한다.</p>	<p>② -----. ----- 제12조에 따른 -----.</p>
<p><b>제13조(지급기준)</b> ① 위원의 일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.</p>	<p><b>제13조(지급기준)</b> ① -----. 예산의 범위에서 -----.</p>

# **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의안 번호	2006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0. 9. 28.  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 **□ 수정이유**

- 시 의원은 매월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받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도 시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.

## **□ 주요골자**

- 위원에게는 위촉기간 동안 일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(안 제10조)

# **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**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제10조 중 “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”를 “그러하지 아니한다.”로 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원 안	수 정 안
제10조(일비의 지급) ① 위원에게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동안 일비를 지급 한다. 다만,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<u>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	제10조(일비의 지급) ①----- ----- ----- -- <u>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